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 6. 1 조례 제1032호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등
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
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를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
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
을 교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를 제출한 공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
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이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 회 ○ ○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 의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이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내용
 -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자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입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제 ○ 회 ○ ○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연 번	설립							미설립															
	직장 협의회 명칭 (소속 기관)	대표자			협의 위원 수	설 립 일	회원				사유	회원											
		근무 부서	직 급	성 명			계 (A)	가입 금지 (B)	가입대상 (C)			계 (A)	가입 금지 (B)	가입 대상 (C)									
									가 입	미 가입													

※ 공무원수 A=B+C

